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!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이행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점검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,
권고 및 보고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또한,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참여 확산에 기여한 개인·기관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